

행정자치부

훈계·주의 요구

제 목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절차 부적정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철원군, 고성군, 양양군

대 상 자 ① 철원군 ○○○○과 지방○○○○○(전 지방○○○○○) ○○○

② 고성군 ○○○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4. 9. 11.부터 2015. 6. 30까지 철원군 ○○○
○○○ ○○○○과에서 지도기획담당(당시 지방○○○○○)으로 근무하였고, 지방
○○○○ ○○○은 2011. 9. 5.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고성군 ○○○에서 식품의
약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록물을 소관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7
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기록물을 처리과에서 보존기
간의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 후 기록물 철단위로 기록관으로 이관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기록관의 장은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
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

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르면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을 평가 및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든 공공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록관으로 이관하고

보존기간 만료시 기록관에서 보존중인 기록물을 대상으로 폐기대상을 선정하여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등 법령에서 정한 평가 절차를 거쳐 폐기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법」 제40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진료기록부 등은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데, 폐업 의료기관으로부터 이관받아 관할 보건소에서 보관하는 진료기록부등은 공공기록물의 지위를 획득하였으므로, 보존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보건소에서 소관 기록관으로 해당 기록물을 이관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강원도 철원군(○○○○○○)은 2015. 3. 18. 자체 문서고를 정리하면서 1980년대 생산기록물, 시범사업 관련 사진첩과 필름, 농가영농 상담일지 등을 기록물 사본, 참고자료, 농사기술관련 책자 등과 함께 55개의 마대자루에 담아 보존기간 경과의 사유로 자체 폐기한 사실이 있고,

강원도 고성군(○○○)은 ○○의원, ○○○의원 등 폐업한 의료기관 2개소로부터 이관 받은 진료기록부 2,744매를 소관 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보존기

간 경과를 사유로 2013. 6. 12. 임의로 폐기한 사실이 있으며,

강원도 양양군(○○○○과)는 2015년 및 2016년도 기록물 평가·폐기업무를 수행하면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서면심의로 대체하여 기록물 평가심의 과정에서 실물확인 및 평가내용에 대한 토론 없이 회의록을 미생산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의견에 따라 심의위원이 심의의결서에 서명만 하는 등 실질적인 기록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록관리 부실을 초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철원군수, 고성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수, 고성군수, 양양군수는

[주의] 앞으로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평가심의회 심의에 따라 기록물 평가·폐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기록물관리 교육 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